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위상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0652 발의연월일: 2025. 6. 2.

발 의 자:김위상・이종배・우재준

구자근 · 김승수 · 김재섭

김선교 • 박충권 • 이달희

김소희 · 임이자 의원

(11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형법」, 「관세법」, 「조세범 처벌법」, 「지방세기본법」,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특정범죄에 대한 가중처벌 등을 규정함으로써 건전한 사회질서의 유지와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며,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에게 임금등을 지급할 의무를 위반한 사업주의 죄를 특정범죄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음.

그런데 「근로기준법」은 근로자에 대한 임금지급 의무를 위반한 사업주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 도록 하고 있고,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르면, 1억원 이상 임금체불에 대하여 가중 기준으로 1년 2개월 ~ 2년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하도 록 하고 있어, 현행 처벌기준으로는 임금체불 총액에 따른 처벌의 수 준이 크게 다르지 않아 고액의 임금체불 사업자가 처벌을 택하고 체불임금 변제를 면탈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임금등의 체불총액이 10억원 이상 고액인 사업주를 가중처벌 함으로써 임금체불을 줄이고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지급받지 못한 피 해자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2 신설 등).

법률 제 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근로기준법」"으로 한다.
제1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11조의2(임금등의 체불에 대한 가중처벌) 「근로기준법」 제109조제 1항에 규정된 죄(같은 법 제36조, 제43조,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 2호 및 제56조에 관한 죄만 해당한다)를 범한 사람은 그가 지급하지 아니한 임금등의 체불총액(이하 이 조에서 "체불총액"이라 한다)이 10억원 이상인 때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가중처벌한다.
 - 1. 체불총액이 10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2. 체불총액이 1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혅 행 개 정 아 제1조(목적) 이 법은 「형법」, 제1조(목적) -----「관세법」, 「조세범 처벌 법」, 「지방세기본법」, 「산 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마약류관리에 관 법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근로기준법」----한 법률 | 에 규정된 특정범죄 | 에 대한 가중처벌 등을 규정함 으로써 건전한 사회질서의 유 지와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 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1조의2(임금등의 체불에 대한 <신 설> 가중처벌) 「근로기준법」 제1 09조제1항에 규정된 죄(같은 법 제36조, 제43조,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및 제56조에 관한 죄만 해당한다)를 범한 사람은 그가 지급하지 아니한 임금등의 체불총액(이하 이 조 에서 "체불총액"이라 한다)이 1 0억원 이상인 때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가중처벌한다. 1. 체불총액이 10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u>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u> 한다.

2. 체불총액이 1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벌금에 처한다.